



## 해외 동정

### “화성에 원자력 발전소 세운다”

**러** 시아가 오는 2030년까지 화성에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는 계획을 발표했다.

러시아 국영 기업인 ‘레드 스타’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밖에 세워질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설계를 마쳤으며, 몇 가지 작은 문제점만 해결하면 모든 준비가 끝난다고 밝혔다. 이 원자력발전

소는 오는 2030년까지 완공하여 화성에 건설될 상설 연구 기지에 에너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미리 만든 거대한 발전소 건물을 지구에서 3억km나 떨어진 화성까지 어떻게 옮기느냐가 문제로 남아 있다. 이에 러시아측은 무인 자동 착륙선을 통해 이 설비를 화성으로 운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러, 印尼와 원자력협력법안 가결

**러** 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원자력 에너지 관련 협력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입안, 이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 법안에 따라 원자력 물질과 장비, 기술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

했고 인도네시아는 러시아로부터 제공받는 원자력 물질 및 기술을 이용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없게 된다.

양국은 이번 협정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연구용 원자로 개발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 이것이 알고싶다

### 제목 :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사항



#### 질의 : 본영식

과기부고시 제2001-20호(2001. 9. 18) 제 4조의 누설점검의 시기에서

- 방사선원을 신규로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인 항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방사선치료를 위하여 밀봉선원 Ir-192를 사용중인데 1년에 2회 교체하여 사용중입니다. 이 때 제조한 나라에서의 certification이 같이 오는데 이 서류가 동 제 4조의 제2항의 증빙서류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년에 2회 교체를 하므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과학기술부 방사선안전과 감기환

귀하께서 질의하신 누설점검의 시기에 대하여 말씀하신 과학기술부고시 제2001-20호 제4조(누설점검의 시기)제1 항제1호에 의거 방사선원을 신규로 인수하였을 경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누설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음을 확인하여 드리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선원의 경우에 대하여 예외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